

주간 행정 홍보

【2020. 6. 22. ~ 2020. 6. 28.】

오 라 동

□ **착한 임대인 2020년 재산세 감면 신청안내 (담당자 728-4802)**

○ 개 요

- 감면대상 : 재산세 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 10%이상 인하한 경우 (1년 기준 환산액)
- 접수기간 : 공포일(6월10일) ~ 2020. 12. 31
- 접수처 : 시 재산세과, 읍·면·동
- 접수방법 : 임대사업자가 방문접수
- 신청시 제출서류
 -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
 - ② 2020년 변경 전·후 임대차계약서
 - ※ 변경 전·후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, 상호 임대차에는 쌍방의 간인이 필요
 - ③ 소상공인 확인서
 - 1) 인터넷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www.sminfo.mss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후 확인서 출력 (문의처: ☎1357, 02-3215-2674)
 - 2)방문: 도청 소상공인기업과에 문의 후 확인서 출력(문의처: 710-2525)
 - ④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제3자 방문 시 임대인 도장 및 방문자 신분증)
 - 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임대인하 규모 및 적용면적 : 2020년 인하한 1년 임대료 환산액이 인하 전과 비교하여 10%이상인 경우 인하율에 비례하여 적용 (감면규모는 임대면적 적용)
- 세액감면율 (구간적용) : **10% ~ 50%적용** (5%단위, 최대50%)
 - ex) 임대료인하율 10%→10%감면, 15%이하→15%감면, 45%초과→50%감면
- ※ 제외자 :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자

□ **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(오등봉) 도시관리계획 입안(안)열람공고**
(담당자 728-4813)

○ 개 요

1. 주요열람내용 :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, 용도지역, 고도지구,
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, 신설) 입안(안)

가.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나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다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신설)에 관한 사항

2.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 : 2020. 6. 17. ~ 2020. 7. 1. (14일간)

나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제주시 도시계획과

(☎064-728-3251~3253, FAX: 064-728-3519)

3. 기타사항

가.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,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
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
시청 도시계획과 (☎064-728-3251~32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 설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의견서는
동주민센터로 제출 가능합니다.

Chapter 02 개발여건분석

4 비공원시설 경계설정

기본방향

- ✓ 대상지가 지닌 제반 여건을 중첩분석(Overlay)하여 가용지 설정
- ✓ 개발 가용지 중 특례조항에 의해 미조성된 공원면적의 30%이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 선정
- ✓ 가급적 훼손지(경작지, 묘지 등)를 활용하고 지형을 고려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도입
- ✓ 훼손지 위주의 배치로 기존 수목을 보존한 환경친화적 배치계획 수립
- ✓ 비공원시설로 인하여 공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입지의 적정성 검토

구분	규모(㎡)	비율(%)
오동봉 근린공원	764,863	100.0
사업부지	521,016	68.1
공원시설	425,590	55.6
비공원시설	95,426	12.5
사업제외지	243,847	31.9



□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안내(담당자 728-4796)

기관소개

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

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'누리고 싶은 삶, 당당하게 사는 삶'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.



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케어)이란?

장애인이 생활하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가족, 이웃,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, 보건·의료, 돌봄,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.

사업개요

정 책 대 상 :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발달(지적·자폐성)장애인, 뇌병변장애인

선도사업기간 : 2019년 6월 ~ 2021년 5월

운 영 기 관 :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

센 터 장 : 최 영 열

주요사업

- ① 장애인지원주택 사업
- ② 장애인 이동지원사업
-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행복플래너 지원사업
- ④ 안심생활지원(스마트홈케어) 서비스 제공
- ⑤ 장애인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
- ⑥ 장애인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

서비스 내용

- 교육 : 일상생활, 금전관리, 건강의료, 교육, 취업지원 등
- 활동 : 장애인활동지원, 주간활동서비스, 문화활동 지원 등
- 건강 : 건강주치의, 정기적 건강검진, 식사 및 식재료 지원 등
- 사회적관계 및 지지망 : 사례관리, 심리상담 및 치료, 공동체모임 지원
- 안심생활지원 서비스 : IoT를 활용한 스마트홈케어 시스템 설치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: 생활 및 이동편의를 위한 주택 기능보강 지원



□ 2020년산 “팥굴” 안정생산·유통 계획 (담당자 728-4812)

○ 개 요

- 내 용: “팥굴”에 대한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화를 통해 2020년산 팥굴의 안전생산과 소비시장 확대

○ 세부시행계획

가. 팥굴생산농장 신청 및 지정

- 주 관: 제주특별자치도(협조 : 행정시, 생산자단체, 농업인)
- 지정신청기간: 2020. 6. 15 ~ 6. 30(16일간)
- 신청기관: 농·감협, 읍면동사무소(산업담당부서)
 - 참여농협: 제주시, 조천, 함덕, 한경, 하귀, 서귀포, 위미, 남원, 표선, 성산일출봉, 제주감귤농협 등 11개 농협
- 신청방법: 필지단위 또는 1,000㎡이상 구획단위로 신청(별지 1호서식)
 - ※ 농약안전성 관리를 위해 나무단위 수확 및 열매숙기 팥굴 출하농장 신청금지
 - 농·감협: 농협계통출하, 가공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신청 접수
 - 행정시(읍면동): 관내 생산농가 중 개별(택배 등) 유통희망 농가 신청 접수
 - ⇒ 유통처가 혼합(농협+개별)이거나, 개별유통 농가인 경우, 농협방문 신청한 경우는, 접수 후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서 송부
- 농장지정 : 신청결과 자체 심의검토 후 지정(신청마감 후 7일이내)
 - ⇒ 행정시(읍면동)에서 과원을 확인하고, 적정한 경우 지정 통지하고, 과원에는 지정사항을 표기(알림판 작성 부착 등)

나. 풋글생산 지정농장 농업인 교육

- 주 관: 농업기술원(협조 : 행정시, 농·감협)
- 교육시기: 2020. 7월초
- 교육내용: 농약안전사용 및 풋글 수확 후 관리요령 등
- 풋글 생산농가용 농약안전 재배력 등 별도 지도 자료 배부

다. 풋글 생산 및 출하계획

- 출하시기: 2020. 8. 1 ~ 9. 15일 까지
- 출하방법: 지정된 풋글생산농장 농업인 여건에 따라 자율(택배 등) 출하를 하거나, 소비지 과실유통 및 가공업체에 납품이 가능한 도내 지역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유도
- 출하계획량: 1,500톤(잠정)
 - * 산출근거: 100ha×15톤(정상적 평균생산과원의 60% 수준)

라.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

- 지원대상: 풋글출하 사전 지정농장(*친환경, GAP검사 중복지원 불가)
- 지원횟수: 2회 이내
- 지원금액: 1회당 170천원 정액지원
- 지원방법: 농약 안전성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잔류농약 검사 후 관련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사후 지원
 - * 잔류농약 전문 검사기관(*전년도 도내에서 검사 실적이 있는 2~3 업체)
 - ⇒ 품관원,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검사기관에서 무상 실시한 경우 지원 제외

마. 유통처리 계획

- 전문가공업체 납품: 650톤수준
 - 도내 · 외 가공업체 수매물량(농협지역본부 사전 협의물량)
- 농협을 통한 계통처리: 50톤 내외 (* 대형마트 등 요구가 있는 경우)
- 택배 등 농가 자율처리: 800톤 수준
 - 사전 풋쿨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(과원)에서 생산된 풋쿨에 한하여 자유롭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판매가능

□ **2020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(담당자 728-4811)**

○ 개 요

- 내 용: 소득활동을 하는 ‘고용보험 미적용자’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
- 지원대상: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‘출산전후휴가급여’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으로,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(19. 4. 2 출산자부터 적용)
- 지원수준: 총150만원 지원 (50만원*3개월, 일괄지급)

○ 신청방법 및 문의

- 신청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(<http://ei.go.kr/index.jsp>)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및 “지원금 종류”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로 방문, 우편 신청 가능
- 신청문의
 - 제주고용센터 홍경희 ☎064-710-4461, dptmrh72@korea.kr
 - 서귀포고용센터 고수경 ☎064-710-4491